

**〈후원회원 기부금
대법원 판결 긴급 간담회〉
발제자료집**

2023. 02. 27(월)

14:00 ~ 15:30

온라인(Zoom)

**주최: KCOC, 재단법인 동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



후원회원 기부금 대법원 판결

긴급 간담회

2023.2.27(월)

오후 2시~3시 30분 온라인 ZOOM



참가신청
QR코드

신청자 추후
ZOOM 링크안내

대상

시민사회 종사자(only)

신청링크

bit.ly/KCOC0227 (KCOC대문자)

프로그램

사회: 류홍변 위원장

2:00~2:05

간담회 취지 및 안내

류홍변 위원장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2:05~2:20

발표1 (15분)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및 의의

김경목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2:20~2:35

발표2 (15분)

공익법인 인건비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및 의의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2:35~2:50

발표3 (15분)

세법상 회비와 기부금 관계 및 실무

박훈 교수 (서울시립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2:50~3:10

참석자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20분)

참석 전문가 및 청중

3:10~3:20

마무리(10분)

류홍변 위원장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문의: KCOC 정책센터 policycenter@ngokcoc.or.kr



주최: KCOC, 재단법인 동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

[발제1]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및 의의

김경목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및 의의

I. 공소사실의 요지 및 재판의 경과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집비용 충당비율 초과로 인한 위반행위

피고인 법인의 운영자인 A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한 기부금품법 소정의 기부금품 중 47%를 직원 인건비, 홍보비 등 모집비용에 사용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15%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하였다.

나. 모집목적 외 사용행위

A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무료급식 등 생활지원개선사업, 자원봉사학생 장학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모집한 기부금품 중 00원을 조의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기부금품 모집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다. 장부 거짓기재 행위

A는 법인의 수입내역을 기재하는 현금출납부에 기부금품 00원을 모집하고도 '회비'로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2. 1심 및 원심의 판단

가.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27. 선고 2019고단1939 판결)

(1) 기부금품법이 적용되는 기부금 해당 여부

- 소위 '회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기부금품 제외 대상(기부금품법 제2조 제1

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위 '회원'은 '소속원'(기부품금법 제2조 제1호 단서 다목)으로 볼 수 없다.

- 약 20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은 A에 정기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 외에 단체를 위하여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정관상 A의 회원은 정회원(회비 월 1만원 이상), 후원회원(회비 월 5천원 이상), 일반회원(재능, 노력봉사)로 구분되며, 회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하고 결의에 참여하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후원이나 정기회원 신청서에 소속 회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없고, 회원 모집 시 회원의 권리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정기회원 신청자들도 법인 소속원이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 '회원'이 법인 구성원이라면 법인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정관에 '회원'의 임원 선임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실제로 의결권 행사한 적도 없다. 정관에 '회원' 규정이 있고 회원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법인의 소속원으로 볼 수 없다.

(2) 모집비용 사용

- 모집비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이고,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모집종사자 인건비, 모집종사자 경비, 사용경비 등이 있다. '회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부금품에 포함할 경우 모집비용의 15%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심(대구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노1224 판결)

(1)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여부

- A 법인에 정기적으로 돈을 납부한 소위 '회원'들은 법인의 소속원이라 볼

수 없고, 이들로부터 회비 등의 명목으로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부금품'이라 볼 것이어서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소속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며, 의사결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후원금 납부자들은 의결권, 법인 운영 자료 열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 회원 모집 시 회원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점,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외에 단체를 위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모집 및 사용의 적정성이 담보되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정관에서 법인의 회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고, 결의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총회 참가자격은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회원들이 총회에 참가한 전례가 없으며,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중요 의결사항을 처리하였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법인의 회원은 단지 후원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며, 총회 참가 자격이 배제된 회원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소속원으로 보기 어렵다.

(2) 모집비용에 사용가능한 비율 초과 여부

- '인건비'와 '홍보비'는 모집비용에 해당하며, 모집비용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만이 아니라 기부금품의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인건비로 사용된 금액은 홍보팀 인건비를 불문하고 모두 모집비용에 포함된다.

(3) 모집목적외 용도 사용 여부

- A 법인의 활동, 금품의 모집목적은 무료급식이므로 직원·회원·자원봉사자·협력단체에 대한 경조사비, 직원·회원·자원봉사자에 대한 장학금 ,

직원들의 숙소 비용 지급은 법인의 모집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장부 거짓 기재 부분(무죄)

-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어야 하며(기부금품법 제7조 제2항),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는 처벌된다(기부금품법 제16조 제2항 제2호).
- 기부금품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는 행위'란 사실과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기재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켜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방해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유용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거짓 기재를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기부모집금 출납부는 기부금을 모집한 일자, 각 기부자의 주소와 성명, 기부 받은 금액 및 누적 기부금액 등을 기재하면 족하다. 기부일시, 기부자의 성명과 주소, 기부금액을 제대로 기재하였다면 기부금을 모집·접수하고도 회비로 기재하였더라도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대법원 2023. 2. 2. 2021도16765 판결(파기환송)

-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A 법인은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모집과정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사정이 없고, 세법상 각종 보고·공시의무 등 법령 위반행위가 없다. A 법인의 지출은 대부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법인의 인건비 및 홍보비는 법인의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 법인에 '정기회원 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회원 자격을 얻게 되고,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1호 가. 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한다. 법인의 설립 목적,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보면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

II.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의 범위

1. 기부금품법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④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호 생략)

제13조(모집비용 부담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¹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표 1]

모집비용 부담비율	
모집금액	적용비율
1. 10억 원 이하	모집금액의 15% 이하
2.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모집금액의 13% 이하
3.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모집금액의 12% 이하
4. 200억 원 초과	모집금액의 10% 이하

2. 기존의 법원 판례

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대법원 2013도 8118 판결은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구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 및 그 요건과 관련하여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단체의 구조적 특성, 모금목적이나 모금대상 등에 비추어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적절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규정된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운영에 있어서 그 구성원 개인의 활동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느 정도 단체 독자의 활동을 영위하고, 단체의 설립목적·조직·운영 및 구성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의 운영진으로, 안티2MB 소속 회원이 회칼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수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과 안티2MB 회원들로부터 모금을 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안티2MB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안티2MB의 의사 결정 체계, 사회적 활동 내역, 구성원 확정절차 등에 비추어 안티2MB는 정치·사회적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조직체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최소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평가되므로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단서 각 목의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해당하고, 안티2MB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한 부분은 불법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과 원심을 유지하였다.

나. 하급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노196 판결²은 법인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팜플렛, 홈페이지, 방문설명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인 정관상 '후원자'나 ' 명예회원'은 가입절차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 법인의 구성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사업 제안, 회의 참석, 의결 참여 등으로 법인의 회비 또는 후원금 사용을 감독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소속원'에 해당하며, 회원들로부터 회비 또는 후원금으로 모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 10. 선고 2016노481 판결은, 기부금품의 예외인 '소속원' 여부를 정관 기재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i) 소속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더라도 실제 활동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관 규정에 근거 기재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법의 예외인 '소속원' 지위를 인정한 한편, (ii) 정관에 회원 지위 내지 소속원으로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는 경우(자원봉사자)에는 소속원의 지위를 부정하였다.

3. 실무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은 4만 여 개에 이르고, 2019년 말 기준 국내 기부금 총액은 14조 5,000억 원 가량으로 나타난 반면, 2018년 제4분기 행정안전부에 2019 사업연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마친 모집목표액은 총 28개 법인의 약 5,400억 원 정도로, 매년 국내 기

²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부금 총액에서 등록된 기부금의 비중은 4 ~ 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기부금 총액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통한 기부금액이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이 기부한 금원을 기부금품법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발간한 「서울, 기부 길라잡이」(2019 개정판)에서도 기부자와 회원(소속원)이 구별되며, 일정한 등록절차를 통해 단체에 가입한 회원(소속원)의 후원금·회비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의 구성원, 회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부자와 회원의 비교]

구분	기부자(donor)	회원(membership)
재정적 기여	기부금 (사용에 제한이 존재)	회비 (사용에 제한이 없음)
이익의 대상	타인	자신
세제혜택	세제적격단체시 가능	세제적격단체시 가능
사용보고	사용결과 신고의무 존재	사용결과 신고의무 없음
참여 및 활동	단체운영에 대한 참여 없음	단체운영에 대한 참여 있음

(출처: 「서울, 기부 길라잡이」, 14면)

4.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의 원심은 정기회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돈을 납부한 '회원'들이 법인의 '소속원'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이들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여 금품의 모집 및 적정성을 감독할 수 있을 만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종전 관행과 달리 소속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단체들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불법 모금을 한 상황에 빠지게 되므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위 대법원 2013도8118 판결에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단체의 구조적 특성, 모금목적이나 모금대상 등에 비추어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적절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여 기부금품 판단을 위한 일응의 기준은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법인의 ‘소속원’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단체의 금품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적절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하급심에서는 정관상의 ‘후원자’나 ‘ 명예회원’을 법인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거나(위 창원지방법원 판결), 실제 활동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관 규정에 근거 기재가 있는 경우 ‘소속원’ 지위를 인정하는가 하면(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회원’이 법인 구성원이라면 법인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거나(이 사건 1심), 법인의 ‘소속원’은 의사결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이 사건 원심)는 등 제각각 판단이 이루어져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대법원 2021도16765 판결은 기부금품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법인의 ‘소속원’이 되려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회원’, ‘후원회원’이 법인의 ‘소속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이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회원 자격을 얻게 되고, 이들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회원에게 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여할 권리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관에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회비 납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원이 법인의 ‘소속원’에 해당하는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모집과정에서 장부의 작성,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결과 공개, 등록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 공인회계사 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 기부금품법 위반 사정이 없고, 세법상 각종 보고·공시의 의무, 외부 회계감사 등 법령 위반행위가 없다는 점을 들어, 모집한 금품의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와 불특정다수로부터 모집한 기부금품 관련하여 기부금품법과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준수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법인에 회비를 납부하는 후원회원이나 정회원으로 부터 받는 회비 또는 후원금은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은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관에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등 법인의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IV.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 사건에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이 모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지출된 비용 역시 모두 기부금품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 법인의 인건비 및 홍보비 지출 비용에 관하여는 모집비용 충당비율 위반으로, 경조사비 등에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는 모집목적 외 사용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A 법인 모집금액의 약 92%)이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모집목적 외 사용 부분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모집비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아 모집비용 충당비율 위반과 관련하여 직원 인건비, 홍보비

등이 '모집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기부금품법 조항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상고심 계류 중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파기판결을 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³

위헌제청신청에서 주장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는 '소속원'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② 기부금품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모집비용'은 모집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원심판결과 같이 홍보비, 인건비 등을 모집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집비용'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모집비용 총당비율을 기부금품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상 여러 규제 및 감독과 같은 기부금의 적정한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고, 개별 단체의 여건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기부금품의 15%로 정하는 것은 지나치며,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부자와 모집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③ 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의 '모집목적 외의 용도'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법집행기관에게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기부금품법은 이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하고자 했던 위 조항들 외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다. 연혁적으로 1951. 11. 17. 법률 제224호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제정되었는데,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기부금품

³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모집금지법 제3조에 대해서는 현재 1998. 5. 28. 96헌가5 결정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995. 12. 30. 법률 제5126호로 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데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고,⁴ 그 후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자율성에 기초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를 지원한다기 보다 모금행위의 부작용을 염려하며 법으로 모금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부금품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더 명확해진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 기부금품법 제2조의 기부금품에 대한 정의는 불명확하여 주무부서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 소지가 다분하며, 언제든지 기부금품 모집단체는 그 해석 여하에 따라 이 사건에서처럼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도 문제이다(기부금품법 제2조 제2호). '그 밖의 방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하여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너무 많다.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한 정의 규정은 1995. 12. 30. 전부개정 시에 신설되었는데, 2000년대 초중반부터 온라인 전문 모금단체가 증가하고 대형 온라인

⁴ 현재 2010. 2. 25. 2008헌바83 결정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 기부 플랫폼이 등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해 왔음에도 현재의 규정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등록이 허용되는 사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포괄적인 조항으로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같은 항 제4호 아.호)이라고 명시적인 위임을 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모집등록이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모집등록이 허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등록청에 맡겨져 있다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미국은 통상 각 주별로 모금법에 따라 모집 등록은 하되 첫 등록 후 영구적으로 허용하면서 사후적인 감독에 주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⁵ 일본의 경우 과거 사회복지법 제73조에서 기부모집에 있어 사전에 지사(知事)의 허가를 요한다고 규정하였는데, 2011. 8. 30. 위 조항이 삭제되어 기부모집에 관한 법률규제는 폐지되었고, 각 단체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기부모집을 하고 있다.⁶ 기부금품의 모집 시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방지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현행 기부금품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기부금품 모집사업 제한, 1천만원 이상 모집 등록의무, 모집방법 제한, 모집비용 총당비율 15% 제한, 모집목적외 사용금지 등과 같은 엄격한 규제일 필요는 없다. 외국의 법제에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사전 등록이나 아예 모집 자체를 규제하지 않더라도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 방지,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 점이 참

⁵ 국회입법조사처, 기부금품 모집·사용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입법·정책보고서 제71호 (2020. 12.), 30

⁶ 김진우, 한양법학 제27권 제4집(통권 제56집), 2016. 11., 303-304 참조

고가 된다.

V. 마치며

기부금품법은 그 목적이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음에도 여전히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는 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하다. 현행법의 불명확한 규정들은 행정청에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과 분란을 가져오고,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과 기부금품의 적절한 사용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필요 이상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기부금품법의 운용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기부금품법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기부를 하고 기부를 받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기부행위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기부금품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법개정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발제2]

공익법인 인건비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및 의의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인인건비서울행정법원판결분석및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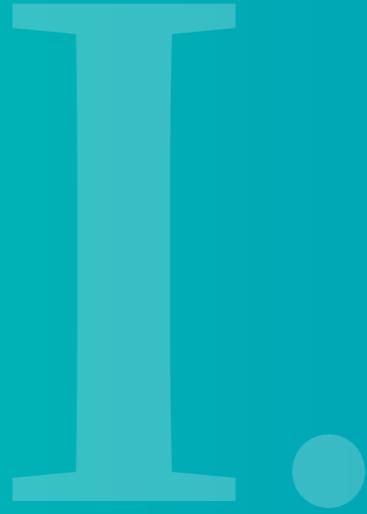
재단법인동천

2023년 2월 27일

황인형 변호사

CONTENTS

- I.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551사건개요
- II. 쟁점 및 주장
- III. 판결의 내용과 의의
- IV. Q&A



I.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551사건개요



I. 사건 개요

당사자

원고 및 피고



- 원고 사단법인 A
공익목적사업으로 연구사업 수행
설립근거법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I. 사건 개요

공익법인의 이해

기부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려면



- (1) 주무관청에 직원 정수 승인을 받는다.
- (2) 기부금 수입에 대해서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편입예외 승인을 받는다.
- (3) 보통재산이 된 기부금을 정수 승인된 직원에게 지급한다.

I. 사건 개요

사건의 발단

갑작스러운 임직원 정수 승인 요구



- 피고는 10여 년 만에 최초로 연구자들에 대한 정수승인 요구 (경고)
→ 원고는 기부금 사용승인, 임직원 정수승인 동시에 신청
- 피고는
 - (1) 미승인 상근임직원 보수 지급 목적이므로 기부금사용승인 반려
 - (2) 서울시 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세부기준에 따라 상근임직원 인건비는 운용소득의 20% 이내에서만 지출 가능하다며 임직원 정수승인 반려

II

II. 쟁점 및 주장



II. 쟁점 및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모순되는 처분?



- 임직원 정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부금 사용승인 불가



- 임직원 정수 승인은 인건비 기준에 안 맞아서 불가

II. 쟁점 및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신뢰에 반하는지?



- 10여년 간 임직원 정수 승인 없이도 기부금 사용승인 해옴
(운영인력 1인만 임직원으로 승인)
- 임직원 현황도 보고 받아서 잘 알고 있었음
- 갑자기 임직원 정수 승인을 받으라는 건 신뢰에 반하는 것 아닌가?
- 임직원 정수 승인과 기부금 사용승인은 별개 아닌가?

II. 쟁점 및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피고 인건비 기준의 뜻



- 운용소득의 20% 이내에서만 인건비 사용 가능
 - 운용소득?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해서 발생한 소득
- 쉽게 말해 기부금으로 인건비 지급할 수 없다는 뜻

II. 쟁점 및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인건비 기준의 문제점



- 누구를 위한 인건비 기준인가? 다른 주무관청도 이렇게 하나?
- 법인 목적사업에 따라 달라지는 지출구조를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운용소득 20% 이내에서 지출 가능한 인건비의 의미는?
법인 운영인력과 사업수행인력을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닌지

II. 쟁점 및 주장

근본적인 시각

“인건비=통제대상”



- ‘인건비는 공익활동과 무관한, 법인 운영비용이다’
 - ➔ ‘적을 수록 좋다’
 - ➔ ‘임직원들이 기부금으로 이득을 누리서는 안 된다’
- 그러면 기부금은 대체 어디에 쓰여야 할까?
 - ➔ 수혜자에게 줘라?

III. 판결의 내용과 의의



Ⅲ. 판결의 내용과 의의

판결내용

판단(1) 연구자 인건비는 사업수행비용이다

- 원고와 같은 학술연구단체에서는 급여와 같은 인건비가 사업수행비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 연구자들은 원고의 목적사업인 학술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인력
- 기부금으로 연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해당 금원을 원고의 공익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Ⅲ. 판결의 내용과 의의

판결내용

판단(2) 피고의 인건비 기준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

- 공익법인법과 관계 법령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운용소득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기준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에는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정도만 있을 뿐 인건비의 재원을 운용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취지의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Ⅲ. 판결의 내용과 의의

판결내용

판단(3) 인건비 기준이 오히려 법령과 충돌한다

- 오히려 법인세법 시행령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고 있음
-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공익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에게 지급된 급여등 인력비용을 '공익목적사업수행비용' 중 '사업수행비용'으로 분류
- 각 규정은 인건비가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함

Ⅲ. 판결의 내용과 의의

판결내용

판단(4) 원고가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우리 사회의 공익법인들이 빈약한 기본 재정과 소극적, 소규모의 사업수행으로 인해서 그 상근임직원의 보수만을 지급하는데 급급한 경우가 다수이고, 설립자가 친인척을 상근임직원으로 두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고 면세 등 혜택만을 누리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부득이 일률적인 이 사건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주장
- 그러나 원고에게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 원고가 책정한 상근직원 보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음

Ⅲ. 판결의 내용과 의의

판결내용

판단(5) 일률적인 건비 기준이 부적합해 보인다

-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재단법인의 경우 (...) 이 사건 기준에 따른 규제가 어느 정도 합리적 일 수도 있을 것
-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단법인은 공익재단법인과 그 목적 및 수행사업이 다르고 지출구조도 달라 이 사건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에 부적합

Ⅲ. 판결의 내용과 의의

판결내용

판단(6)사업 중단에 이르게 한다

- 결국 원고가 연구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됨
- 원고가 이 사건 기준이나 이후 개정된 (...)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 종전과 같은 규모의 연구자를 고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임

III. 판결의 내용과 의의

판결의 의의

긍정적 요소



- 공익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은 수입의 종류와 비중, 지출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단체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일률적 인건비 규제는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
- 세법의 종합 해석을 통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공익목적사업수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
- 향후 세법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정하는 비용 분류의 체계를 중심으로 규제 제도가 일관되게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II. 판결의 내용과 의의

판결의의의

약간의 아쉬움



- 주무관청의 지도에 의하여 운영담당 직원만 상근임직원으로 승인을 받음
- 그런데도 신뢰의 보호가치가 없다고 본 점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움

IV. M.Q&A



—
감사합니다

재단법인동천

2023년 2월 27일

황인형 변호사

bkl DONGCHEON
FOUNDATION

[발제3]

세법상 회의와 기부금 관계 및 실무

박훈 교수 (서울시립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후원회원 기부금 대법원 판결 긴급 간담회 (2023.2.27)

세법상 회비와 기부금 관계 및 실무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약력)

서울대 법대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박사 졸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목 차

- 1. 기부금에 대한 기본구조**
- 2. 세법상 회비에 대한 과세상 취급**
- 3. 기부금품모집법과 기부금의 관계**
- 4. 실무사례**
- 5. 유의사항**

1. 기부금에 대한 기본구조 (1)

- 기부금 관련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제혜택
- ✓ 출연재산(기부)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추징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 :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
 - 출연재산 : 그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
- ✓ 출연재산(기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재산 등의 공익목적 사용 및 각종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하는 공익법인에는 증여세 등을 과세

1. 기부금에 대한 기본구조 (2)

-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 개인기부자 : 세액공제(근로자등), 필요경비(사업자) 인정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31.>

- ✓ 법인기부자 : 손비 인정

- 기부금 세액공제

-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21년·’22년 기부분은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천만원 초과분 **30%**(’21년·’22년 기부분은 35%),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1. 기부금에 대한 기본구조 (3)

소득세법[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1. 기부금에 대한 기본구조 (4)

- 기부금 공제 개정 연혁

과세표준		2013년 이전	2013년 개정	2015년 개정	2018년 개정	2021년 개정
공제방식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15%	15%	15%	2021년 기부금 20%
	4,600 ~ 8,800만원	24%	(3천만원 초과분 25%)	(2천만원 초과분 30%)	(1천만원 초과분 30%)	(1천만원 초과분 35%)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2. 세법상 회비에 대한 과세상 취급 (1)

- 소득세법상은 “회비”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시행령상은 “회비 ” 에 대한 처리 나타남
- ✓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시행령 55조 26호)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 공익성을 고려하는 정하는 **기부금**에 일부 포함하는 경우 있음(소득세법시행령 80조 1항 2호)
 -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2. 세법상 회비에 대한 과세상 취급 (2)

- 법인세법상은 “회비”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법인세법시행령상은 “회비 ” 에 대한 처리 나타남
- ✓ 법인세 소득세 계산시 손비 인정(법인세법시행령 19조 11호)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시와 같은 문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정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 3. 21.>

2. 세법상 회비에 대한 과세상 취급 (3)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회비”에 대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대상으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기부금품모집법과 기부금의 관계 (1)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약칭: 기부금품법) 제2조에서 “기부금품”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구분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3. 기부금품모집법과 기부금의 관계 (2)

- 판례상 기부금품법 제2조에서 “기부금품” 관련 입장(대법원 2023.2.2 선고 2021도16765 판결)
- ✓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회원 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기부금품모집법과 기부금의 관계 (3)

- 기부지만 기부금품법 제2조의 “기부금품”에 제외되는 것이라도 세법상 기부금 혜택이 유지될 수 있음
-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정한 기부금품에 대해 모집과 사용에 대해 국가가 통제를 한다는 의미
- 세법상 기부금이라는 것은 무상이전에 대해 기부금품법상 통제를 받는 경우와 통제의 필요성이 없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대법원 2023.2.2 선고 2021도16765 판결에서 회비에 대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포함 안된다는 것이, 기부금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4. 실무사례 (1)

- 법인, 서면-2022-법인-2985 [법인세과-1117] , 2022.07.28

1. 사실관계

○○회의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지역의 상공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질의법인(지정기부금단체 아님)은 ‘2030 ○○○○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 유치 민간위원회’를 출범(’22.5월)

-유치활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부족한 일반회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회원에게 특별회비를 부과*할 예정

* 박람회 유치활동에 소요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관에 따라 회비 징수

2. 질의내용

소속회원(내국법인)이 ○○회의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정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실무사례 (2)

- 상증, 서면-2018-상속증여-2757 [상속증여세과-93] , 2020.02.28

1. 사실관계

OO협회는 설립목적인 회원사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특정사업의 준비를 담당하면서 회원사에게 특수목적회비를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실무사례 (3)

-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3183 [상속증여세과-95] , 2020.02.28

1. 사실관계

OO법인은 공연 및 교육을 통한 기독교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종교 법인(주무관청 허가)으로 문화전도집회사업과 문화예술선교사 훈련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OO법인의 수입은 다음과 같음

- 1) 기독교 창작뮤지컬 공연티켓판매수입
- 2)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회비,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

2. 질의내용

선교사들의 회비,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4. 실무사례 (4)

- 법인, 서면-2019-법인-3273 [법인세과-3482] , 2019.12.18

1. 사실관계

*** 정관에 따르면 ** 회원은 운영회원(총회 출석·의결권, 임원선거권·피선거권 등 보유)과 후원회원(**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후원금만 기부)으로 나뉘어 있음

* 법령 § 39①(1)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세계인권단체)

현재 후원회원이 내는 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운영회원이 내는 회비에 대해서는 발급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운영회원이 내는 회비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지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5. 유의사항

- 회비라도 기부금일 수는 있음
- 회비라는 명칭과 별개로 실제로 대가가 주어진다면 기부금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 있음
- 실무상 공익법인등에 대해 회비라고는 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음. 이때문에 질의회신도 많은 상황이기도 함
- 기부금품법 모집에 대해 그 대상이 아닌 기부금 및 회비라 하더라도 세법상 혜택을 받는 기부금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 있음